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 완화〉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23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7.
3. 회부연월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기간을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
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 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u>4년</u> 이 지난 날까지 제15 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u>1년</u>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 ----- ----- <u>5년</u> ----- ----- ----- <u>2년</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개정안 제13조의5제3호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기간을 설치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할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경기 불황, 대규모 투자 유치 애로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제13조의5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¹⁾에는 제3호에 따른 승인 취소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공장용지의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로, 개정안 부칙은 안 제13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장을 착공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장을 착공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6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